

2025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가 필요한 직무훈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2. 추진 근거

- 「고용보험법」 제114조(시범사업의 실시)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7조 제2호(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시범 훈련과정)

3. 사업명 :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 근로자가 원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이 훈련비를 지원하면,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 제도

4. 주요내용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 * 훈련대상 : 훈련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취득 재직근로자 및 취득 예정 근로자
- (지원내용)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훈련비의 50% 지원
 - * 그동안 사업주훈련으로 수강할 수 없었던 다양한 훈련과정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사업주훈련 지원 한도와 동일
- (훈련방법 및 시간) 제한 없음
- (지원항목) 훈련비
 - 기업에서 훈련비를 선납한 후 훈련을 수료하면, 사업주가 납부한 훈련비의 50% 환급
- (참여기간 및 훈련비 신청) '25.3~12월 사이에 훈련받은 과정에 한하며, 예산 소진 시 훈련비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5. 운영절차

① 훈련과정 신청	②과정 심사	③과정 풀 공지	④훈련 참여	⑤훈련비 신청
→ 공단	공 단	공 단	기업 → 훈련기관	기업 → 공단
1 : '25.2.17-2.21 2차: '25.9.15-9.17	지원제외 과정 등 심사	1차: '25.2.28(금) 2차: '25.9.24(수)	근로자가 원하는 과정 선택 참여 (훈련비 사업주 납부)	영수증과 수료증 등 첨부하여 훈련비 신청

① (훈련과정 신청) 교육훈련기관이 운영을 희망하는 과정을 신청

- 참여자격 : 비환급과정을 보유한 교육훈련기관(직업능력심사평가원 미인증기관도 참여 가능)
- 모집과정 :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과정

모집 제외 과정

1. 내일배움카드, 사업주훈련 등 이미 통합심사를 받아 운영하는 과정(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받은 과정과 과정명, 커리큘럼이 동일한 과정)
2. 공통 법정훈련* 및 직무 법정훈련**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등 직무와 직접적 관련 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 ** 법령에서 교육 대상의 직무가 특정된 교육이거나 개별 사업주에 대한 평가 또는 인증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에 교육·훈련 근거가 있는 교육)
3. 외국어 과정(외국어 능력평가 시험을 목적으로 하거나 어학 능력개발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과정)
4. 학위 취득 과정(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 등 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
5. 직무 관련성 낮은 훈련(취미, 오락, 스포츠, 재테크, 시사, 일반상식, 힐링, 스트레스 관리 등)
6. 포럼, 세미나, 연수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과정(단, 명사 특강 등 커리큘럼이 존재하고 출결·수료 여부 확인이 가능한 과정의 경우 기업이 신청하는 과정에 한해 지원 가능)
7. 이미 정부 지원으로 훈련비 지원을 받는 과정(해당 기관에서 환급과정으로 운영한 이력이 있거나, 타 기관에서 환급과정으로 운영하는 과정과 동일·유사한 과정)
8. 훈련과정 구성 시 원격 방식은 최대 50%까지 편성 가능하며, 원격 방식은 비대면 쌍방향(실시간) 형태에 한해 지원 가능

- **신청방법:** 훈련기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주도 훈련과정 ①**신청 공문**, 지원제외 과정(타 기관 환급과정과 유사한 과정 포함)을 제외한 ②**비환급 훈련운영 희망과정 리스트**(별첨), 지원제외 과정에 대한 ③**자체진단 확인서**(붙임1) 제출
- **제출방법:** 신청마감일 24시까지, 공단 기업지원부 메일을 통해 서류 제출(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 4upchu@hrdkorea.or.kr)

신청 시 유의사항

- 훈련과정 신청 양식 엑셀 자료(별첨) 내 1~3번 시트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
 - * 누락된 정보가 있는 과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지원 제외 과정이 아님을 자체 진단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붙임1)를 작성하여 제출
 - * 특히, 타 기관에서 환급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필수
- ↳ 고용24 URL(www.work24.go.kr) 내 구분 탭 중 "직업 능력 개발" → "훈련 찾기 · 신청" → "훈련 통합검색"을 통해 동일 · 유사과정 조회 및 확인 必

- (접수기간) 하단 표 참조

구분	훈련기관 과정 신청	과정 POOL 공지	비 고
1차	2. 17.(월) ~ 2. 21.(금)	2. 28.(금)	-
2차	9. 15.(월) ~ 9. 17.(수)	9. 24.(수)	예산 조기 소진 시 1차 접수만 운영

② (과정심사) 공단에서는 접수된 훈련과정 신청 자료 확인 및 검토

- **점검내용:** 지원제외 과정의 포함 여부, 과정 신청정보 누락·미기재 확인
 - * 심사 결과 과정 POOL에 공지되는 과정은 당해연도 말일(~'25.12.31.)까지 운영

③ (지원대상 과정 POOL 공지) 심사 결과 최종 구성된 과정 풀 안내

- **안내장소:** 공단 홈페이지, HRD4U 공지사항 게시판
- **Pool 外 과정조치:** 훈련과정 풀에는 없으나, 기업과 근로자가 희망하는 과정*이 발생할 경우 연 3회(3, 6, 10월) 심사 · 지원(신청주체 : 기업)
 - 마이크로소프트, SAP, 레드햇, AWS 등 글로벌 기업 주최 실시간 비대면 혼합 교육, 명사 내한 교육과정 등

구분	기업 희망과정 신청	과정 POOL 공지	비 고
1차	3. 10.(월) ~ 3. 12.(수)	3. 28.(금)	예산 조기 소진 시 축소 운영
2차	6. 16.(월) ~ 6. 18.(수)	6. 27.(금)	
3차	10. 13.(월) ~ 10. 15.(수)	10. 31.(수)	

④ (훈련 참여) 기업은 과정 풀 내 근로자가 원하는 훈련을 지원하고, 훈련기관은 HRD-Net 내 과정 등록 - 실시 신고 - 수료 보고 실시

* 과정 등록, 실시 신고, 수료 보고 실시 기한은 일반사업주훈련과 동일하게 적용

** 2025년 3월부터(2025. 3. 1.~) 실시한 훈련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나, HRD-Net 전산 구축일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된 일정 간 실시 완료한 과정에 한하여 전산 구축 완료 이후 14일 이내까지 절차 등록 必

⑤ (훈련비 신청) 기업은 훈련비 납입 영수증과 수료증 등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고용24」를 통해 훈련비 신청

- 제출서류: ①근로자 훈련 참여 사업주확인서(붙임2), ②근로자 훈련 참여 훈련기관 확인서(붙임3), ③훈련비 납입 영수증, ④훈련 수료증

- 비용지급: 사업주가 납입한 훈련비(납입 영수액 기준)의 50%*, 기업이 고용24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여 등록한 계좌로 지급(사전 등록 필수)

* 원 단위 이하 절사, 십원 단위로 지급

<훈련비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근로자 훈련 참여 사업주확인서 * [붙임2] 양식 참고
2. 근로자 훈련 참여 훈련기관 확인서 * [붙임3] 양식 참고
3. 훈련비 납입 영수증
4. 훈련 수료증(필수 포함사항 : 과정명, 과정 개요, 교육 방법)
 - 원격(혼합)훈련의 경우, 원격·집체 비중 및 비대면쌍방향(실시간) 과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할 것

<훈련비 납입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서류>

1. 전자계산서(영수함으로 기재된 것)
2. 카드매출전표+카드 앞면 복사 사본(사업주명 확인)
3. 현금영수증(사업주나 법인번호로 발행)
4. 전자계산서(청구함)+훈련기관 발행 수납확인서(또는 금융기관 발행 계좌이체 내역)

6. 유의사항

- 훈련과정 신청·등록 및 운영 절차에 있어 부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과 본 공고문에 따라 해당 과정 풀 제외, 당해연도 또는 차년도 사업 참여 배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타 기관 환급과정과 동일·유사과정 등 지원제외 과정의 풀(Pool) 신청·등록 등

- 지원대상 과정 풀에 등록되었다고 하여, 추후 과정운영 중에 발견되는 부정행위 등에 대한 사업참여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또는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기업 및 훈련기관에 있음

※ 상기 처분 및 불이익에 해당하는 제재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55조, 제56조, 제62조4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2 등에 근거

문 의 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로 문의

－ 이메일 : 4upchu@hrdkorea.or.kr

－ 유선 : 052-714-8276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운영 희망과정 자체 진단 확인서

기 관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명 :

구 분	해당 여부		비고 (모집 제외 과정)
	예	아니오	
내일배움카드(유효기간 내 과정)	○		1·7번
사업주훈련(유효기간 내 과정)			
기타 심평원 통합심사 과정(유효기간 내 과정)			
공통·직무 법정훈련			2번
외국어 과정			3번
학위 취득 과정			4번
직무 관련성 낮은 훈련			5번
포럼, 세미나, 연수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과정			6번
컨소시엄·지산맞·일학습 등정부 지원으로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과정			7번

본 기관에서 제출한 00개 과정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모집 제외 과정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위 사항에 대한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55조, 제62조4 등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5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근로자 훈련 참여 사업주확인서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명 :

훈 련 사 항 :

연번	성명 (훈련생)	훈련과정명	전화번호	서명 (훈련생)

본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14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등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사업**』에 당사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17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 등에 비용 환수·벌금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5 년 월 일

기업명 : (직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근로자 훈련 참여 훈련기관 확인서

기 관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명 :

훈 련 사 항 :

연번	훈련과정명	사업장명 (훈련생 소속)	성명 (훈련생)

본 기관은 고용보험법 제114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등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사업』을 통해, 상기 훈련사항에 기재된 훈련생(근로자)이 훈련과정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상기에 기재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운영한 경우 해당 과정 풀 제외, 당해연도 또는 차년도 사업 참여 배제,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5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